

##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인정서

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 제11조제2항 단서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6항에 따라 해당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을 면제합니다.

1. 상 호 명: 대흥화학공업(주)
2. 대 표 자: 이춘남
3. 주 소: 경기도 평택시 산단로 15번길 52
4. 대상 건축자재: [ ] 접착제, [ ] 페인트, [] 실란트, [ ] 퍼티, [ ] 벽지,  
[ ] 바닥재, [ ] 기타( )
5. 면제 제품명: IGS 410
6. 유효기간: 2021년 01월 04일
7. 면제 사유: 오염물질 방출시험 적합판정을 받은 제품(IGS 606)과 화학적조성 및 제조공정이 동일함

한 국 환 경 산 업 기 술 원 장

